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 
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# 변 안 동 의

발의연월일 : 2006년 4월 21일

발 의 자 : 오장세위원외 인

## 1. 주 문

- 안 제3조제1항중 “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## 2. 제안 이유

-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있어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착오 및 혼선을 없애고자 함.

# 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<u>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----- -----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